



제391회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과관리체계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포함〉
■ 정정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622호)

2021.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성과관리체계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포함	2
※ 참고자료	9
1. 정부업무평가 종합 체계도	9
2.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 평가결과	10
3.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11
4. 국정과제 평가 내 사회적 가치 반영 현황	12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사회적 가치 반영 현황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정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21.
3. 회 부 일 : 2021.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6호).

Ⅲ. 검토의견: 성과관리체계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포함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및 정부업무평가·성과관리의 정의에 “국가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향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u>확보하기</u>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3. ~ 5. (생략)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 <u>효과성</u> 등의 관점에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u> -----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6. ----- ----- ----- ----- <u>효과성, 국가균형발전 등 사</u>

현행	개정안
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생략)	<u>회적 가치 실현</u> -----. 7. (현행과 같음)

□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2-2.),¹⁾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²⁾

[그림 1] 정부업무평가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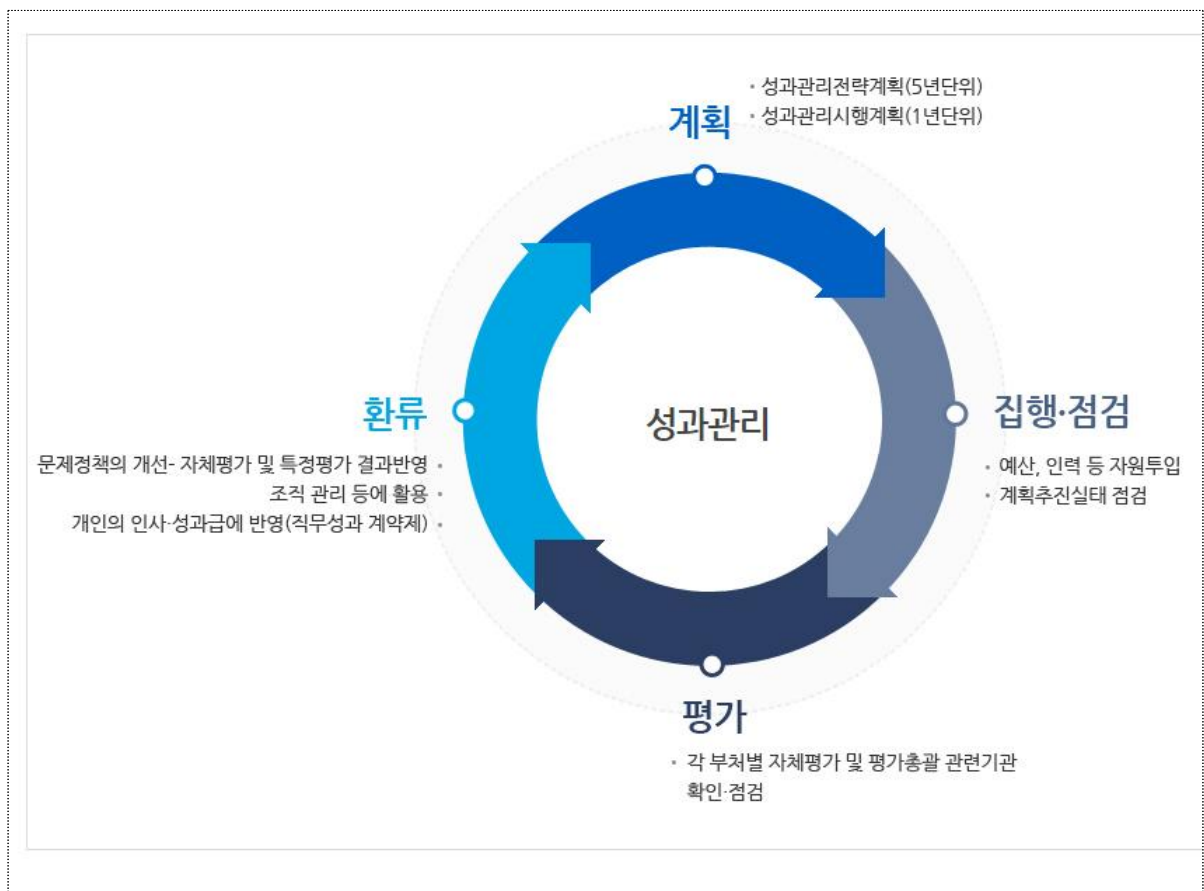
(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는 【참고자료 1】 참조

2)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이 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부터 평가결과와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까지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정부부문의 성과관리는 기관의 임무와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미리 제시하고,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2-6.),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5), 매년 이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6).

[그림 2] 성과관리 추진 체계



(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졌음.

○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³⁾

□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 및 정의 조항에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 사회적 가치는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포함함.⁴⁾⁵⁾

○ 현 정부는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정부혁신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①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그리고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수립하였음.⁶⁾

3) 평가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A(30%), B(50%), C(20%) 등급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기관종합평가 결과는 【참고자료 2】 참조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사례집』, 2020.12., 4쪽

5) 사회적 가치 세부항목의 주요 의미는 【참고자료 3】 참조

6) 관계부처 합동,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018.3.

○ 이 중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정책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세부과제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평가 내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⁷⁾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⁸⁾ 공공기관별 평가계획에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1] 정부혁신 평가 내 사회적 가치 반영 현황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기관의 혁신역량(10)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7
		• 혁신 학습활동		3
혁신 성과(75)	참여와 협력(20)	국민참여 성과	• 국민참여 정책화 성과	7
			• 국민참여예산	2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
		• 기관 간 협업 추진성과		6
	국민체감 공공서비스(25)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10
		포용적 서비스 확대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10
			• 혁신지향 공공조달	5
	일하는 방식 혁신(20)	• 데이터기반 업무 효율화		7
		조직문화 혁신	• 조직내부 변화관리	8

7) 국정과제 평가 내 사회적 가치 반영 현황은 【참고자료 4】 참조

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사회적 가치 반영 지표 현황은 【참고자료 5】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 여성관리자 확대 성과	5
	대표 혁신성과 (10)	• 기관의 대표 혁신 누적성과	10
	국민체감도(15)	• 국민평가단·국민 체감도 평가	15

주: 음영부분이 사회적 가치 관련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202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음.

[표 2] 부처 자체평가 지표(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21.1월)

단 계	평 가 지 표
계 획	• 사업 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10) * 지자체 및 민간이 아닌 정부지출 필요성(5), 사업방식의 효과성 및 자원분담 적절성(5)을 종합적으로 판단
관 리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 *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집행률로 평가 ** 연례적 이·불용 사업인 경우 감점 (집행률이 연속 하락하며 3년간 집행률 70% 미만) (△5)
결 과	•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10)
환 류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감 점	• 타 평가 및 국회·감사원·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성과 미흡 등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는가? (최대 △5) * 이외 감점 항목은 부처별 자체 수립·활용 가능
가 점	•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인가? (최대 5) * 이외 가점 항목은 부처별 자체 수립·활용 가능

(자료: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기본운영방향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제시하고, 이들의 정책 및 업무 추진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국무조정실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이미 관련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업무 평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명시하는 것이 기본법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할 필요성과 이미 일정 부분 실시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참고자료 1】 정부업무평가 종합 체계도

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5개)	일자리 ·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자체평가 (46개) * 45+국조실	주요정책(성과관리)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정부업무평가법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법 국가균형발전법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균형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행안부 인사처 행안부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지방 자치 단체	합동평가	25개 기관, 116개 지표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공공 기관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6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존치평가 24개, 자산운용평가 45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7개)	과기연 소관(25개) 과기정통부 산하(16개) 해수부 산하(3개) 원안위 산하(2개) 방사청 산하(1개)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연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경제 ·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241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자료: 국무조정실)

【참고자료 2】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 평가결과

구 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1.26.)

【참고자료 3】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 장애인,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018.3., 13쪽)

【참고자료 4】 국정과제 평가 내 사회적 가치 반영 현황

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 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 행안부 · 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 · 경찰청 · 감사원 · 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 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 ·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 ·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 · 과기정통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 · 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 · 국토부 · 행안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 ·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주: 음영부분이 사회적 가치 관련

(자료: 국무조정실)

【참고자료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사회적 가치 반영 현황

□ 합동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 113개(97%)

※ 이하의 사회적 가치 분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9.1월)상 분류에 따름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4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을 등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9개

*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건축안전 수준 평가,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등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15개

*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1개

*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실적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21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⑥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3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등

⑦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4개

*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달성률 등

⑧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8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등

⑨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5개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목재산업 우수사례 등

⑩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0개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2개

*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재생에너지 3020 및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추진 등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2개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체계 확립 우수사례 등

⑬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9개

*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

(자료: 국무조정실)